



보도일시	2019. 12. 10.(화) 보도 부탁드립니다.		총 3쪽(첨부자료 2건 별도배포)
배포일시	2019. 12. 09.(월)	담당부서	(사)엔케이워치 사무국
담당자	사무국장 이관형 (☎ 02-6413-8221 ✉ info@nkwatch.org)		

## ICC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부름에 응답하라

### 김정은에 대한 ICC의 면책? ICC의 사법적 정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사)NKWatch(대표: 안명철, 이하 엔케이워치)는 2016년 12월 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 김태훈 변호사)과 공동으로 네델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를 방문해 ‘살인, 고문, 자의적 구금, 비자발적 실종 등 북한 인권범죄 상황’ (*Situation in the DPRK Crimes against Humanity including murder, torture, arbitrary detention, involuntary disappearance*)을 담은 ‘고발장’ (Communication)을 접수했습니다. (ICC 검찰국 고발장 접수문 OTP-CR-424/16, 첨부자료 1. 별도참고)



※ 2016년 12월 9일 ICC를 방문한 엔케이워치 안명철 대표(출처: 엔케이워치 홈페이지)

이 ‘고발장’을 통해 엔케이워치는 김정은을 북한 인권 가해 책임자 혐의로 지목했고, 그 근거로 엔케이워치가 2013년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조사한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을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관련 기구에 제출한 ‘청원서’들을 사용했습니다.<sup>1)</sup> 그리고 북한이 「로마 규정」의 가입국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내법 (「대

1) 엔케이워치는 북한 인권 침해 조사와 개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철폐 등을 주요 활동 목표로 2003년에 설립한 비

한민국 헌법』)에 따라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역시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로마 규정」 제12조에 의해 ICC가 ‘인적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22일 ICC로부터 돌아온 회신은 ICC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관념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거해 한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시민권 실현을 위한 평가 절차에 따라 모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당국으로부터 한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엔케이워치가 “언급한 범죄 혐의는 가입국의 영토나 가입국가 당국에 의해 행해진 일이 아니기에 ICC의 관할권 행사를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ICC 검찰국 회신 첨부자료 2. 별도참고)

그리고 이러한 ICC의 입장은 ICC 검찰국이 2019년 12월 5일에 발표한 ‘2019 예비조사 활동’ 보고서 (Report on Preliminary Examination Activities 2019)<sup>2)</sup>에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sup>3)</sup> 이에 따라 엔케이워치는 ICC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ICC의 능동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첫째, ICC의 피동적이고 불합리한 관할권 해석은 반인도적 범죄 가해 책임자 김정은에 대한 면책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북한의 억압과 폭력을 벗어나고자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과 앞으로 정착할 북한 주민들의 정당한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둘째, ICC는 스스로의 존재의 이유를 「로마 규정」 전문을 통해 상기하시기 바랍니다.<sup>4)</sup>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는 생존한 피해자들과 유엔을 통해 이 시간에도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엔케이워치는 ICC가 상식적 수준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셋째, 엔케이워치는 ICC가 보다 포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할권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법 전문가들과 함께 법률적 논리를 보강하고, 더 많은 증

---

영리민간단체입니다. 엔케이워치는 지난 2013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에 있는 고문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여성폭력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강제실종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강제구금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장애인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등에 북한 인권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청원서들을(petitions) 제출해오고 있습니다. 엔케이워치가 2019년 11월 말까지 유엔에 제출한 청원서 건수는 약 800건입니다.

2)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Report on Preliminary Examination Activities 2019* (5 December 2019). <https://www.icc-cpi.int/Pages/item.aspx?name=191205-rep-otp-PE>

3) 관련 보도 참고. 이연철, “ICC 검찰국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관할권 없어.’” VOA, 2019년 12월 6일. <https://www.voakorea.com/a/5194572.html>

4) 「로마규정」 전문에 의하면 ICC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는 처벌되지 않아서는 안되며, (중략)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태를 종식시키고, 이를 통하여 그러한 범죄의 예방에 기여”해야 합니다.

거들과 함께 ICC의 문을 다시 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법률적 대안도 찾겠습니다. 북한 최고지도부가 현재 자행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들과 과거사 청산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엔케이워치는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사법적 정의에 의존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ICC는 북한과 북한 밖에 생존해 있는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부름에 반드시 응답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시민들과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고합니다. 북한에 보편적 인권과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힘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행동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북한의 평범한 주민들은 ‘인권’이란 용어를 알지도 못하며, 오직 그들의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규범과 가치 즉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엔케이워치는 한반도의 38도선 북쪽에도 인류를 향한 보편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진리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연대와 지지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 엔케이워치는 북한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법 전문가 그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문과 도움을 주실 의사가 있는 전문가 개인 혹은 그룹이 있으시다면, info@nkwatch.org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실 경우 (사)엔케이워치 이관형 사무국장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02-6413-8221 ✉ info@nkwatch.org)
- 2개의 첨부자료는 엔케이워치의 내부 문건으로 본 내용에 대한 취재, 보도를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첨부자료를 받길 원하시는 기자님들은 상기 이메일 주소로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